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
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민간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「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1124호, 2025. 11. 11. 공포, 2026. 11. 12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가.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대상 기관, 지정 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, 업무지침, 실적 보고, 지정 취소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0조의3)
- 나.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의 기부금품 접수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(안 제10조의4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3 및 제1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3(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의 지정·운영 등)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

1. 「국립공원공단법」에 따른 국립공원공단
2. 「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립생태원
3.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
4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연구원
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계약 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, 그 지정내용을 고시해야 한다.

③ 법 제16조의3제2항제5호에 따른 “그 밖에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효율적 운영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

을 말한다.

1. 법 제16조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위한 사업유형 발굴, 사업 컨설팅 및 참여자 수요 조사 등에 관한 사항
2. 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모니터링 및 효과성 평가에 관한 사항
3. 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·연구 및 교육·홍보에 관한 사항
4. 지원센터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효율적 운영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④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마련해야 하는 지원센터의 업무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운영실적 평가 및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운영실적 평가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센터의 운영·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⑤ 지원센터장은 전년도 운영실적(제10조의4제5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현황 및 사용 실적을 포함한다) 및 해당 연도 운영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

⑥ 법 제16조의3제4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

다.

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.

제10조의4(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) ① 지원센터는 법 제16조의3제5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. 다만,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센터는 기부금품을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.

④ 지원센터는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.

⑤ 지원센터는 기부금품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0조의3(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의 지정·운영 등)</u> <u>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</u> <u>1. 「국립공원공단법」에 따른 국립공원공단</u> <u>2. 「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립생태원</u> <u>3.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</u> <u>4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연구원</u> <u>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지정할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, 그 지정내용을 고시해야 한다.</u>

③ 법 제16조의3제2항제5호에 따른 “그 밖에 생태계서비스 지불계약의 효율적 운영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법 제16조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계약을 위한 사업 유형 발굴, 사업 컨설팅 및 참여자 수요 조사 등에 관한 사항

2. 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계약의 모니터링 및 효과성 평가에 관한 사항

3. 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계약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·연구 및 교육·홍보에 관한 사항

4. 지원센터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태계서비스지불계약의 효율적 운영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④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

마련해야 하는 지원센터의 업무
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
포함되어야 한다.

1. 운영실적 평가 및 운영계획
수립에 관한 사항

2. 운영실적 평가를 위한 위원
회의 구성 · 운영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
관이 지원센터의 운영 · 관리
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
사항

⑤ 지원센터장은 전년도 운영실
적(제10조의4제5항에 따른 기부
금품의 현황 및 사용 실적을 포
함한다) 및 해당 연도 운영계획
을 매년 2월 말까지 기후에너지
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

⑥ 법 제16조의3제4항제3호에
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
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
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
경우를 말한다.

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
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지원센
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
취소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.

<신 설>

제10조의4(기부금품의 접수 절차

등) ① 지원센터는 법 제16조의 3제5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 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 증을 발급해야 한다. 다만, 익명 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 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기 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 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 해야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센 터는 기부금품을 기부자가 지정 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 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 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 로 사용할 수 있다.

④ 지원센터는 기부금품에 대해 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.

⑤ 지원센터는 기부금품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7228